[2026-7]

해외
연구동향
Report

日 경제안보추진법 개정 동향
– 싱크탱크 및 관민협의회 신설

2026년 3월 31일

무역안보관리원 정책연구팀 김호영 연구원

본 보고서는 '26년 3월 日 내각부의 「통합 경제 조치를 통한 안보 증진 법안과 국제협력은행법 일부 개정안(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及び株式会社国際協力銀行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kosti 무역안보관리원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해외
연구동향
Report

목차

Ⅰ. 개요

Ⅱ. 주요내용

1. 종합적 경제안보 싱크탱크 신설
2. 관민협의회 신설
3. 보안 및 행정 사항

Ⅲ. 개정안 심의 경과

kosti 무역안보관리원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Ⅰ 개요

○ ’26.3.19. 日 정부는 경제안보추진법[1] 개정안을 각의결정[2]하여 국회에 제출[3]

– ’22년 법률 성립 이후 최초의 대규모 개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위기관리투자(危機管理投資)'의 일환[4]

○ 개정안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싱크탱크(전문 조사 역량)와 관민협의회(정보 공유 체계)를 법제화

Ⅱ 주요 내용

1. 종합적 경제안보 싱크탱크 신설

○ **(배경)** 경제안보를 둘러싼 과제가 날로 복잡해지면서, 외교·정보·방위·경제·기술 등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지식의 결집이 필요

○ **(기능)** 내각관방을 사령탑*으로 하여 경제 안보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언 수행

* 정부는 조사연구의 기본 방향, 위탁 업무, 외부 연구기관 활용 등을 정한 '조사연구 기본지침'(調査研究基本指針)을 책정·공표

○ **(운영 구조)** 내각총리대신이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RIETI)에 위탁*

* RIETI법[5]을 함께 개정하여 소관 업무에 경제안보 조사연구를 추가하고, 해당 업무의 주무대신을 내각총리대신으로 규정

– 내각총리대신은 RIETI 외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조사연구기관에 위탁 가능

* ①조사연구를 수행할 전문적 능력 보유, ②경제안보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정리·보관 능력 보유, ③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연계 능력 보유, ④정보 안전관리 조치를 적확히 실시할 능력 보유

---

1) 정식 명칭은『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안전보장의 확보를 추진하는 법률(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며, 통칭『경제안보추진법(経済安保推進法)』으로 불림
2) 각의결정(閣議決定): 총리와 국무대신(장관)이 모여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하는 절차. 각의결정 이후 법안은 정부안으로서 공식 지위를 가짐
3) 日 내각부, “제221회 특별국회(第221回 特別国会)”
4) 아사히 신문, “「경제의 무기화」에 대항, 리스크 허용 국가가 지원 경제안보법 개정안「(経済の武器化」に対抗、リスク許容し国が支援 経済安保法改正案)”, (발행일: 26.3.19)
5) 정식 명칭은『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법(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法)』

○ **(협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RIETI 및 외부 조사연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가능(재량 규정)

2. 관민협의회 신설

○ **(배경)** 경제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공통 인식을 형성하고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공유·협의의 장이 필요

- 협의의 장을 법정 틀(法定の枠組み)로 격상하고 정보 취급 규정을 정함

○ **(기능)** 국가와 국민의 경제안보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유 및 대책 협의
⇒ 구성원은 협의 결과에 기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

○ **(구성)** 내각총리대신이 조직하며, 관계 행정기관장, 특정 중요 물자 공급업자, 특정 기간 인프라[6] 제공업자 등의 사업자, 학자 등으로 구성

○ **(운영)** 싱크탱크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RIETI에 위탁

○ **(협조)** 구성원에게 자료 제공·설명·의견 표명 등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3. 보안 및 행정 사항

○ **(보안)** 싱크탱크 및 관민협의회 종사자(퇴직자 포함)는 국가 공무원과 동등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 위반 시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

Ⅲ 개정안 심의 경과

○ 각의결정 당일 중의원·참의원 양쪽 소관위원회 접수 완료[7]

- 여당이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보유하여 큰 어려움 없이 가결 예상[8]. 끝.

6) 기간인프라(基幹インフラ): 국가 경제·사회 활동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법률에서는 '특정사회기반역무'(特定社会基盤役務)로 표현
7) 日 국회, "내각법 제221차 제30대 국회 통합 경제 조치 취해, 국제협력은행법 부분 개정 법안(閣法 第221回国会 30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及び株式会社国際協力銀行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8) 중의원 우월 원칙(일본헌법 제59조제2항): 중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참의원이 부결한 경우 중의원이 2/3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안 확정

참고 경제안보추진법 및 국제협력은행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 개정안 총괄

○ **(목표) ❶공급망 강화, ❷인프라 안보, ❸기술 연구개발, ❹해외 사업지원, ❺싱크탱크 및 관민협의회**의 5가지 축을 통한 **외부 의존도 저감** 추진

- **안보의 범위**를 물자 중심에서 **'역무(서비스)' 중심으로 확장**하고, **금융 지원 수단을 강화**

□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영역	주요 변경점
특정 중요 물자 안정 공급	① 중요 물자의 공급에 필수적인 **역무(서비스)에 대한 지원** ②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상호 연계·협력 노력 의무** 요청
핵심 인프라 서비스 확보	① 특정 사회 기반 사업에 **'의료 분야'**(병원 및 의료정보 기반 등) **신규 추가** ② 사업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운용 개선**
첨단 중요 기술 개발 지원	**지원 기금 수탁 대상 법인을 확대**하여 민간 연계 강화 (연구개발 독립행정법인 → 특별법 설립 법인)
특정 해외 사업 촉진	① **경제안보상 중요한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제도 창설 ② **국제협력은행(JBIC)법**의 목적 규정에 **경제안보 관련 조항 추가** ③ JBIC 전용 **재무 관리 계정 신설** 및 민간 자금만으로 조달이 어려운 '특정 해외 사업'에 **후순위 출자** 등 지원
싱크탱크 및 관민협의회	① 종합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언을 수행**하는 업무를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RIETI)에 추가 ② 관민 관계자가 참여하여 경제안보를 확보하기위한 대책등에 대해 협의하는 **관민협의회 신설**

□ 벌칙 및 행정 사항

○ **벌칙 규정 (실효성 및 보안 강화):**

- **비밀 유지 위반:** 관민협의회 및 싱크탱크 종사자 위반 시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 **보고 의무 위반:** 특정 해외 사업자 허위/거부 시 30만 엔 이하 벌금

○ **시행 시기**

-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 단, **싱크탱크 및 관민협의회** 등 핵심 규정은 **6개월 이내 조기 시행**